

**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 
조례증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**

1994. 7. 5.  
시민보건의위원회

**1. 심사결과**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5. 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4. 5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3회임시회 제1차위원회('94. 7.5)상정, 의결

**2. 제알설명의 요지**

(제안설명자 : 조만형 산업과장)

**가. 제안이유**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의거 기금관리공무원 명칭과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해당조항을 개정,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.

**나. 주요골자**

-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,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 (안 제5조제1항)
-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(안 제5조제2항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**

(김 전재 전문위원)

-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에서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으로 하고, 기금운용관을

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- 동조례안은 1993. 9. 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1994. 3. 5 규칙 제167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

- 질의(홍길표 의원) :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면 안되는가?
- 답변(조만형 산업과장) : 모든 회계관계법에 기금출납원은 계장이므로 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.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

**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 
조례증개정(안)**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6. 28.  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**1. 개정이유**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의거 기금관리공무원 명칭과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, 해당조항을 개정,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,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(안, 제5조제1항)
-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(안, 제5조제2항)

3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4. 신규 조문대조표 : 별첨

5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4. 3. 26 법률 제4741호) 제133조 제2항
- 지방재정법(1991. 12. 31 법률 제4466호) 제110조 제1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(1993. 9. 23 대통령령

제13981호) 제156조

-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(1994. 3. 5 규칙 제167호) 제18조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(안)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	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스계장으로 한다.	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스계장으로 한다.	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.